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 - 832호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아동 연령별 맞춤형 교육·상담으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조기·적기에 개입함으로써 평생 건강한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22.12.26. ~ '25.12.31.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대상 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의과)
 - (인력 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상근, 비상근)
 -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시 인력 요건은 '22.12.1. 기준 요양기관현황에서 해당 전문의 근무가 확인되는 의료기관에 한함
- 요양급여비용을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등)으로 청구하는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2.11.28.(월) ~ '22.12.16.(금) 18:00까지(신청 완료분에 한함)
- 제출서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약정서(붙임1, 2 참조)
- 접수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통해 신청

◇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https://biz.hi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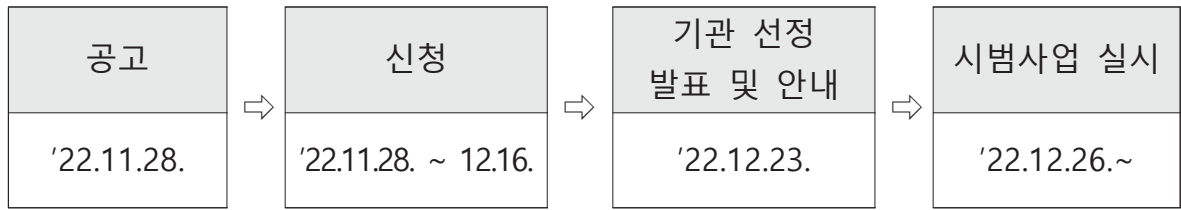
- ①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로그인
- ③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선택/ 화면이동
- ④ 시범사업 신청
- ⑤ 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 ⑥ 시범사업명: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선택
- ⑦ 요양기호, 요양기관명, 신청일자, 신청구분: 공동인증서 로그인 정보로 자동입력
- ⑧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메일주소: 연락 가능한 이메일 기재
- ⑨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내용확인** 을 눌러 내용을 확인
* 참여약정서 [미확인]일 경우, 신청 불가
- ⑩ 약정서 동의여부: 선택
* [미동의]일 경우, 시범사업 참여 불가
- ⑪ **신청** 을 눌러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규모: 약 3,000개 내외 기관
- 선정기준
 - 의료기관의 시범사업 신청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신청기관의 종별, 전문과목 등 신청요건 적합 여부 등 확인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록 완료 예정

○ 선정절차



○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 발표 및 안내

- 시기: '22.12.23.(예정)
-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선택/화면 이동 → 시범사업 신청 → 시범사업 신청내역 조회

진해상황	내용
검토진행	시범기관 검토 중
승인	시범기관으로 승인
반려	시범기관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4.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시범기관에서는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하여 소속된 전담의의 자격 변동이 있을 시, 이를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포털에 신고하여야 함
-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모 결과에 따라 추가 공모여부 결정 예정

[붙임 1]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기관명		요양기호	
전화번호		e-mail	

본 의료기관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고
사업 약정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붙임 2]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

기관명 :

요양기호 :

위 기관은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이하 “시범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수가 반환 및 시범사업 기관 지정 취소 등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1. 의무 및 협조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시범기관은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복지부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범기관은 복지부의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자료를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요청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의료기관 출입을 요청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범기관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시범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영계약 체결 및 관련서류 제출 등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의료진에 대해 직접 고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점검상의 조치

가.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복지부는 시범기관이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중단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폐업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범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 참여가 중단된다.

5. 제재조치 등

- 가.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시범기관은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지체 없이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다. 건보공단은 가~나목에 따른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금액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시범기관이 가~나목에 의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보공단이 시범기관에 지급하여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요양급여 비용 등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건보공단은 시범기관이 가~다목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이행 약정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시범기관의 시범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한다.

6. 준용

이 이행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